

HANKUK
Lawfirm

NEWSLETTER



2026년 5월

1. 2025년 투자법: 투자·사업 업종 축소
2. 정부령 제337/2025/ND-CP호: 전자 근로계약 활성화 촉진
3. 재무부 통칙 제09/2026/TT-BNV호: 해외 노동력 송출 증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요금 상한선
4. 판례 제82/2025/AL호: 혼인신고 이전 부부 공동재산 인정 기준



투자법 제143/2025/QH15호

일부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 축소



2025년 개정 투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베트남의 투자·사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개혁의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조건부 사업 업종 38개를 축소하고, 그 외 20개 업종에 대한 관리 범위를 수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업의 자유가 확대되고 기업의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축소된 업종의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업
- 통관 대행 서비스업 ...



전자 근로계약은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정부령 제337/2025/NĐ-CP 호 제3조 제1항).



서면 근로계약을 대신하여 전자 근로계약의 사용을 권장한다.

(정부령 제337/2025/NĐ-CP 호 제4조).

전자 근로계약

정부령 제337/2025/NĐ-CP호



전자 근로계약 체결 절차

정부령 제337/2025/ND-CP호



1/

적격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2/

계약 당사자
신원 확인



3/

문서 작성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부여



4/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업체의 데이터 전자
인증 수행



5/

국가 플랫폼에 계약을
업로드하여 ID를
식별하다



6/

각 당사자에게 계약서
를 송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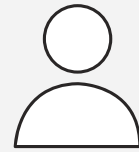


판례 제82/2025/AL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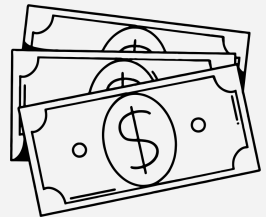
- E씨는 C씨에게 토지 매입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동 재산의 1/2 분할을 요구한다.
- C씨는 해당 토지가 E씨와 혼인하기 전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매입한 본인의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 매도인은 해당 토지를 E씨와 C씨 부부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



혼인 관계 성립 의사 및 시간적 배경 검토



양도인(매도인)의 진술에 대한 평가



자금 흐름의 출처에 대한 평가



민사 거래에서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에 대한 설명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의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2003년 「토지법」 제9조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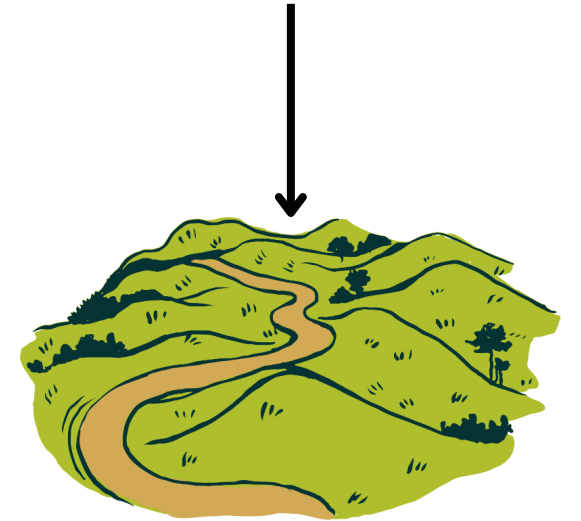


E씨 - 외국인

재산 취득을 위한 자금 출연



C씨 - 베트남 사람



C 여사가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사용권증명서에 명의자로 등재됨



결혼

법원의 판단

"2013년 7월 9일자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이 E씨와 C씨의 혼인신고일(2013년 8월 6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2013년 4월 16일 E씨와 C씨는 이미 혼인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 7월에 혼인식을 거행한 바 있다.

따라서 지적도 제335호 제58번 필지 면적 219.3㎡의 토지를 E씨와 C씨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근거가 있다."



HANKUK
Lawfirm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5월의 법률 개정 동향은 행정 절차 개혁과 디지털 전환 촉진이라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사 법률 자문 부서에 문의하시면 기업에 적합한 영향 평가 및 준수 방안 수립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



HANKUKLAWFIRM



0942 339 063



info@hankuklawfirm.com